

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유사 기능을 가진 통합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, 유사기능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지방채상환기금 및 현행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운용의 규정을 준수하고, 지방채 발행 지양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등 적극적 채무관리로 지방채 잔액 감소를 통한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※ 별표 - 참고자료

- 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와 「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비교

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구미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. 다만,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 방식에 의한다.

③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「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~ ② (생략)

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